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. 2. 17 선고 2020가단582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나현진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1. 27.

판결 선고2021. 2. 1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8. 31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위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 유한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는 C에 대하여 6,974,156원 및 그 중 2,219,260원에 대하여 2015. 5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에 의한 금액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, 2019. 2. 22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도하고, 그 무렵 원고를 통하여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나. 망 E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은 2018. 1. 28. 사망하여, 그 배우자인 F와 자녀인 피고, C, G, H, I, J, K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법정상속분(① F: 3/17, ② 피고, C, G, H, I, J, K: 각 2/17)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는데, 위 상속인들은 2018. 8. 31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, 이에 따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위 각 상속분에 관하여 2018. 9. 10.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C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

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(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).

나.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,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,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위 금전채권은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위 금전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. 나아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(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),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(2/17)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,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광현

별지